

부산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가단3000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국중권, 허기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성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준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제준

변론 종결 2022. 9. 2.

판결 선고 2022. 1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0. 1. 2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4,484,923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등의 채권은 E 주식회사를 거쳐 2017. 9. 11.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093497호로 C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24. 'C는 원고에게 5,258,073원 및 그중 4,484,923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8. 17. 확정되었다.

다. C의 부친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G(대습상속인), H, I, C가 있었다(법정상속분은 3:2:2:2이다).

라. 피고는 2020. 7.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해 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J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20년 2분기 기준 이 사건 아파트 중 11분의 2 지분의 시가는 27,272,000원(= 150,000,000원 × 2/11, 천 원 미만 버림) 정도인 사실, ② C가 1993. 7. 21.부터 2016. 10. 30.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미국에 체류하면서 대학을 졸업(2000. 6.)하고 사업을 한 사실, ③ 피고와 망인이 C에게 유학비로 미화 합계 37,000달러 정도를 송금하고 사업자금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망인이 사망한 후에 피고가 C에게 지급하거나 C를 위해 지급한 금전은 망인이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C가 위 유학비 등을 망인에게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와 망인 부부는 경제적으로 결합된 가족공동체이고 피고에게 망인으로부터 독립한 소득원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가 망인으로부터 위 유학비 37,000달러 등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수증액이 위 11분의 2 지분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C가 상속받을 재산(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제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민석

별지